

수원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5788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혁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24.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11. 30. 접수 제184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9794)에서 2008. 7. 25. C은 원고에게 2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가소10499)에서 2018. 12. 21. C은 원고에게 2019. 2. 28.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아들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조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 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22. 3. 4. 위 조정에

따른 채권액을 45,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원고에게 2022. 3. 4.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위 조정에 따른 채권은 2022. 3. 4. 채무자인 C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단지 F동

[도로명주소] 용인시 기흥구 G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아파트

1층 401.6596㎡, 2층 내지 15층 각 656.6962㎡, 16층 650.3298㎡, 17층 507.7738㎡,

18층 및 19층 각 324.32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용인시 기흥구 D 대 172,101.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48.628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72,101.8분의 130.95. 끝.

